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신장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9720 발의연월일: 2025. 4. 10.

발 의 자:신장식·진선미·허성무

박정현 • 백선희 • 강경숙

김재원 · 황운하 · 정춘생

서왕진 • 민형배 • 한창민

이해민 · 김선민 · 차규근

강준현 • 민병덕 • 이강일

김준형 • 정혜경 • 박지원

김용만 의원(2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는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추심이 금지된 채무자에 대한 추심의 제한은 규정되어 있으나, 그 보증인에 대한 추심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음.

그런데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과 관련하여 그 회생 계획 또는 면책 등의 효력이 보증인에게도 미치도록 개정하여야 경제적 파탄의 방지라는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의 취지에 부합한다는 지적이 있는 것이고, 그와 같은 개정이 이루어질 경우 그에 발맞추어 현행법도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회생절차 등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보증인에 대한 추심을 금지하는 방

향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임.

이에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회생절차 등이 진행 중인 경우 보증인에 대한 추심을 금지하여 보증인에 대한 보호 를 강화하려는 것임(안 제12조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신장식의원이 대표발의한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9717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법률 제 호

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2조제3호의2 중 "제593조제1항제4호"를 "제44조제1항제3호의2, 제45조제1항(보증인에 관한 변제의 요구의 경우에 한정한다), 제58조제1항제4호, 제593조제1항제4호·제4호의2"로, "제600조제1항제3호에"를 "제600조제1항제3호·제3호의2에"로, "개인회생채권에"를 "채권에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|
| 제12조(불공정한 행위의 금지) 채 | 제12조(불공정한 행위의 금지) - | | |
| 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 | | | |
| 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| | | |
|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 | | | |
| 니 된다. | | | |
| 1. ~ 3. (생 략) | 1. ~ 3. (현행과 같음) | | |
| 3의2.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| 3의2 | | |
| 관한 법률」 제593조제1항제4 | <u>제44조제1항제3호의2,</u> | | |
| 호 또는 제600조제1항제3호에 | 제45조제1항(보증인에 관한 | | |
| 따라 <u>개인회생채권에</u> 대한 변 | 변제의 요구의 경우에 한정한 | | |
| 제를 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| 다), 제58조제1항제4호, 제593 | | |
| 일체의 행위가 중지 또는 금 | 조제1항제4호·제4호의2 | | |
| 지되었음을 알면서 법령으로 | <u>제600</u> 조제1항제3호 • | | |
| 정한 절차 외에서 반복적으로 | <u>제3호의2에</u> <u>채권에</u> | | |
|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| | | |
| 4. • 5. (생 략) | 4.•5. (현행과 같음) | | |